



덕성(德性)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

덕성여자대학교

수신자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협조요청(교외연구)

1. 관련 : 소득세법 제81조(가산세) 및 제164조의3(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), 법인세법 제75의7(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)
2. 2019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19년 1월~6월 근로소득(예정 포함) 연구원 중 미지급급여를 지급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대상자 : 2019년 1월 1일~2019년 6월 30일 동안의 산학협력단 소속의 모든 근로소득자

나. 협조요청 사항

1) 대상

- 2019년 1월 1일 ~ 2019년 6월 30일 동안 산학협력단의 근로소득 연구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
- 2019년 1월 1일 ~ 2019년 6월 30일 동안 산학협력단의 근로소득 연구원 중 참여기간 및 지급금액 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리되지 않은 급여

2) 지급신청방법 및 서류제출

- 신청방법 : 통합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인력등록(변경) 및 근로계약절차 진행
- 서류제출 : 각 과제 담당자

3) 신청기한 : ~ 2019.06.20.(목)

4) 예외 : 2019년 6월 급여는 통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정기지급일에 지급될 예정일 경우, 별도 신청 필요 없음.

다. 유의사항

- 1) 산학협력단으로 지급요청하지 않은 연구원의 급여는 산학협력단에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기한 내에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누락되어 발생하는 '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'는 연구책임자가 개인부담 및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문의처

1)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: 인지원(☎내선 8636)

2) 근로계약체결관련 : 각 과제 담당자 (☎내선 8633~8635, 8637). 끝.

산학연구과장

창업센터, 독어독문학과, 사학과, 철학과, 미술사학과, 경영학과, 국제통상학과, 사회학과, 심리학과, 사회복지학과, 정치외교학과, 유아교육과, 수학과, 정보통계학과, 식품영양학과, 생활수신처 : 체육학과, 컴퓨터공학과, IT미디어공학과, 인문과학연구소, 사회과학연구소, 자연과학연구소, 식물자원연구소, 약학연구소, WISE센터, 지식문화연구소, 덕성혁신신약센터, 도봉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, 바이오공학과, 약학대학(교학), 약학과, 화학과

결재	직원 06/06 인지원	과장 김선영	단장 전결06/07 강남희
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협조 직원 노보영

시행 산학연구과-001371(시행일자:2019.06.07)

접수

우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/ <http://www.duksung.ac.kr>

전화 02-901-8636

팩스

/ happyeye36@duksung.ac.kr

/ 공개(호)